

## 대중소기업 및 공공기관 간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콘텐츠 산업 동반성장을 위한 한국콘텐츠진흥원·(주)에스엠면세점 협약서(안)

한국콘텐츠진흥원(이하 “진흥원” 이라 한다)과 (주)에스엠면세점(이하 “SM” 이라 한다)은 한국의 콘텐츠산업 발전 및 한류콘텐츠 활성화, 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대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양해각서를 체결한다.

**제1조 (목적)** 본 협약은 “진흥원” 과 “SM” 이 신뢰를 바탕으로 ‘한국콘텐츠산업 발전’ 과 ‘성과공유 확산을 통한 대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동반성장’ 을 위해 협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### 제2조 (협력내용)

- (1) “진흥원” 과 “SM” 은 한국콘텐츠산업의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.
- (2) “진흥원” 과 “SM” 은 국산 중소콘텐츠 기업과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.
- (3) “SM” 은 운영하고 있는 국내외 인프라시설에 대한 공간지원 및 콘텐츠 유통을 지원하고, “진흥원” 은 패션, K-POP, 캐릭터 등 우수하고 다양한 국산 콘텐츠의 연계, 판로 개척 등의 마케팅을 지원한다.
- (4) “진흥원” 과 “SM” 은 한류 관광콘텐츠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을 위해 상호 노력하며, 한류 관광콘텐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공동 이벤트 프로모션 개최 및 주요행사 협력 등을 상호 협력 하에 추진한다.

**제3조 (성과공유 및 동반성장)** “진흥원” 과 “SM” 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공공기관의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한 성과공유 확산 및 동반성장을 위해 적극 협력한다.

**제4조 (양해각서의 이행)** “진흥원” 과 “SM” 은 협력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 양해각서에 의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한다.

**제5조 (발효 및 유효기간)** 본 협약서는 “진흥원” 의 대표와 “SM” 의 대표가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되며, 협약 당사자 중 일방이 협약 해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유지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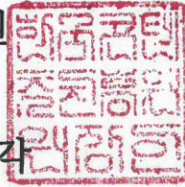
제6조 (협약의 변경) 본 협약 내용의 변경 사유 발생 등 부득이한 경우 상호 합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.

제7조 (기타사항) 본 협약의 주관사 외 그룹사인 (주)하나투어 계열사 중 본 협약서 목적 및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해 나간다.  
본 협약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 또는 협약서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른다.

이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016년 10월 7일

한국콘텐츠진흥원



원장 송성각

(주)에스엠면세점



대표임정오  
최종윤